

# 예 산 총 칙

제 1 조 (총칙) 2021년도 영주시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추정손익계산서,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 현금 흐름표는 다음과 같다.

## 가. 추정손익계산서

| 차 변         |             | 대 변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
| 비 용         | 순이익         | 수 익         | 순손실 |
| 8,536,769천원 | 1,339,367천원 | 9,893,136천원 | 0원  |

## 나. 추정재무상태표

| 차 변           | 대 변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자 산           | 부 채       | 자 본           |
| 186,268,847천원 | 743,317천원 | 185,525,530천원 |

## 다. 추정현금흐름표(자금계획서)

| 과 목                       | 금 액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I.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    | 1,339,367천원    |
| II.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   | (30,116,003)천원 |
| III.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  | 22,039,452천원   |
| IV. 현금의 증감( I + II + III) | (6,737,184)천원  |
| V. 기초의 현금                 | 6,737,184천원    |
| VI. 기말의 현금                | 0 원            |

제 2 조 (업무의 예정량)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.

가. 급 수 전 수 : 27,141전 나. 연 간 생 산 량 : 15,105천 m³

다. 1일 평균생산량 : 41.4천 m³

제 3 조 (수익적수입 및 지출)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| 수입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지출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제 1 관 상수도사업수익   | 9,893,136천원 | 제 1 관 상수도사업비용   | 8,553,769천원 |
| 제 1 항 영 업 수 익   | 9,684,008 " | 제 1 항 영 업 비 용   | 7,953,769 " |
| 제 2 항 영 업 외 수 익 | 209,128 "   | 제 2 항 영 업 외 비 용 | "           |
| 제 3 항 특 별 이 익   | 0 "         | 제 3 항 예 비 비     | 600,000 "   |

제 4 조 (자본적수입 및 지출)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자본적수입액이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1,339,367천원은 상수도 사업수익액 1,339,367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.

| 수입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지출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제 1 관 자본적수입    | 30,106,864천원 | 제 1 관 자본적지출         | 31,446,231천원 |
| 제 1 항 고정자산매각수입 | 0 "          | 제 1 항 유 형 자 산 취 득   | 17,001,121 " |
| 제 2 항 비유동부채수입  | 0 "          | 제 2 항 비유동부채상환금      | 0 "          |
| 제 3 항 자본잉여금수입  | 23,369,680 " | 제 3 항 비가동설비자산취득     | 13,114,000 " |
| 제 4 항 유 보 자 금  | 6,737,184 "  | 제 4 항 기 타 자 본 적 지 출 | 882 "        |
| 제 5 항 기타자본적수입  | 0 "          | 제 5 항 예 비 비         | 1,330,228 "  |

제 5 조 (계속비)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| 관 | 항 | 사 업 명 | 총 액 | 연 도 | 연 할 액 |
|---|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-|
|   |   | 해 당   | 없 음 |     |       |

제 6 조(채무부담행위)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과 기간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| 사 항 | 기 간     | 한 도 액 |
|-----|---------|-------|
|     | 해 당 없 음 |       |

제 7 조 (지방채) 공기업채 발행을 위한 기채의 목적, 한도액, 기채의 방법,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| 기 채 목 적 | 한 도 액 | 기 채 방 법 | 이 자 율 | 상 환 방 법 |
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        | 해 당   | 없 음     |       |         |

제 8 조 (일시차입금)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,200,000천원으로 정한다.

제 9 조 (예산전용 금지과목) 다음에 계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.

(1) 인 건 비 : 2,570,392천원 (2) 업무추진비(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) : 10,600천원

제 10 조 (타 회 계로부터의 보조금)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타 회계로부터 이 공기업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23,151,000천원이다.

제 11 조 (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) 이익잉여금 없음

제 12 조 (중요자산취득 및 처분)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| 구 분 | 종 류 | 명 칭     | 수 량 | 금 액 |
|-----|-----|---------|-----|-----|
|     |     | 해 당 없 음 |     |     |

제 13 조 (회전기금) 회전기금의 한도액 해당없음

2021. 12. .

영 주 시 장